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직 채용 절차(면접전형 및 합격자 결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인재개발원

내 용

「서울특별시공무직관리규정」 제9조(채용)에 “공무직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가’과-30495/2014.12.3.)」(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방법을 고지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기록하여 인력 채용의 합법성을 준수하여야 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2014년 12월 ○○분야 공무직 2명을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 공무직 채용계획”(‘가’과-15253, 2014. 12. 2.)을 수립, ○○분야 공무직 채용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분야 공무직 채용일정 및 절차 부적정〉

구 분	방침서 및 공고 일정	부적정 사항	비 고
채용공고	2014.12.3. ~ 12.14	없음	
응시원서접수	2014.12.15. ~12.17	없음	방문접수, 26명 응시
1차서류심사	2014.12.18	없음	심사자 : 담당 ‘갑’, 담당팀장 ‘을’ 담당과장 ‘병’ (3명)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4.12.19	없음	채용인원 3배수 6명 합격

2차 면접전형	2014. 12.23(화) 14:00부터	6명중 4명이 면접에 응시하여 면접이 종료되어, 면접대기자들은 모두 돌아가고 면접 점수를 채점 중, 면접장소에 나타난 '정'에게 면접전형에 응시한 응시자들의 양해도 없이 진행중인 채점을 멈추고 면접을 재개하는 등, 채용면접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함	'장'이 면접전형에 지각을 하게된 경위서 징구(교통사고로 늦음) ※ 제시간에 면접에 참여한 4명의 응시자들에게 면접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면접당시 남1명, 여 3명)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및 공고	2014. 12.30	없음	면접당시 지각을 한 '정' 합격 합격자 2명 모두 남자 면접에 참여한 여자 중 1명(무)이 의문제기 - 면접당시 남자는 1명
민원발생	2014.12.30	면접결과 3등을 한 '무'의 민원제기 - 면접당시 4명이 참석하였고 남자는 1명이었는데 어떻게 합격자 2명이 모두 남자인지?	지각하였으나, 면접에서 1등하고 합격한 '정'의 합격포기각서 징구
민원발생 이후	- '무'의 민원제기 이후, 합격자 '장'이 201*.***.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 면접결과 3등 즉 민원을 제기한 '무'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무'가 **분야 공무원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근거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 '무'는 최종합격 관련 근거서류 없이 채용 신원조회 대상자가 되었고 - 201*.***. 인사시스템에 공무원 임용 입력됨, 임용일 201*.**.***자		

○○분야 공무원 2명 채용공고에 26명이 응시하여, 2014.12.19. 서류심사 전형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인 6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4. 12. 23.(화) 14:00부터 면접전형을 진행하였고,

면접 당일 대상자 6명 중 2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4명(남자 1명, 여자 3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이 끝나, 응시자 4명은 모두 귀가하였고, 면접전형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채점표를 수집하여 업무담당 '갑'이 점수를 집계 중에, 면접전형에 불참한 '정'이 면접 전형을 위해 출석하자, 당시 담당팀장인 '을'팀장이 면접전형이 종료되어 참가한 응시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면접전형에 늦게 도착한 '정'에게 면접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그 결과 늦게 도착한 '정'을 1위 합격자로 선정하여 2014.12.30. 공무원 합격자를 발표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응시자중 탈락한 '무'가 2014.12.30. 합격자 발표일에 공무원 채용 면접 전형시 남자가 1명이었는데 2명의 남자가 합격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인재개발원에서는 당일 1위로 합격한 '정'이 합격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차점자인 '무'를 합격자로 재결정 하였다.

또한, '정'의 합격포기 각서 접수 및 차점자인 '무'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는 내부 결재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예비합격자가 최종합격자가 되었음에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채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고, 예비합격자 '무'가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였다는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무원 합격 채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였고,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되는 등, 공무원 채용 전반에 걸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직 채용관련 업무에 있어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시고, 특히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